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- 388호

“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무탄소에너지보증)”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5. 14.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(무탄소에너지보증) 지원 공고

1 지원개요

□ 지원개요

- 무탄소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대출보증 지원

□ 지원기관 : 신용보증기금 (이하 “보증사업기관”)

□ 지원규모 : 1,250억원

□ 지원대상

구분	지원대상	기업규모
① 클린테크 특화보증	▶ 클린테크 산업*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* 상세내용 붙임 참조	중소·중견 기업
② 무탄소 프로젝트 보증	▶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하고, 에너지(전기, 열)를 공급·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*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* 자가소비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80kW 이상 지원	

- 주1) 무탄소에너지 설비의 부속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설비가 무탄소 에너지 설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주2) 무탄소 프로젝트 보증 지원대상은 설비를 설치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기업에 한함(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)

대상채무

구분		대상채무
①	클린테크 특화보증	▶ 무탄소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·생산에 필요한 운전 자금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생산·운전자금
		▶ 무탄소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제조·생산에 필요한 설비 도입 및 관련 사업 확장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
②	무탄소 프로젝트 보증	▶ 무탄소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시설자금

보증금액

- 대출금액의 100% 이내에서 보증사업기관 내규에 따름

보증한도

-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

보증료

- (기준요율)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

최저 보증료율	최고 보증료율
연 0.5%	연 3.0%

- (우대적용)

클린테크 특화보증	무탄소 프로젝트 보증
기준요율에서 0.3%p 차감	연 0.5%

- (수납시기) 1년 단위로 보증서 발급시 또는 만기 연장시 수납

□ 보증심사

-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기업의 신용도, 사업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
 - 평가등급은 보증사업기관의 내규에 따르며, 보증접수 및 신용조사 등을 거쳐 등급 산출
 -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이 제한

□ 지원절차

구 분	단계별	주요내용
산업통상 자원부	① 사업계획 공고	무탄소에너지보증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
보증 사업 기관	② 무탄소에너지 보증 신청/접수	무탄소에너지보증 신청/접수 및 대상기업 확인
	③ 보증 상담	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, 보증금지·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제출 안내
	④ 현장조사	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 조사 실시 ▶ 기술개발, 제품화, 생산능력 및 경영상태, 자금상태 등 확인
	⑤ 심사/승인	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, 기후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	⑥ 보증서 발급	보증약정 후 은행 등 금융기관(채권기관)에 전자보증서 발송
금융기관	⑦ 대출약정/실행	보증사업기관으로부터 전자보증서 수신 후 대출 취급

□ 지원 제한

- 보증사업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구분	제한대상
보증금지	▶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하여 보증사업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
보증제한	▶ 휴업중인 기업, 대출금 연체기업 ▶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 ▶ 보증사업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업 등

주)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의 세부내용은 신용보증규정 참조

□ 신청방법 : 보증사업기관 홈페이지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5. 5. 14. ~ 상시 * 예산 소진 시 종료

2 유의사항

- 보증사업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금지 또는 제한됨
- 보증서 발급은 보증사업기관이 기술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보증심사 시 보증사업기관 내규에 따른 심사료가 부과될 수 있음

3 기타사항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보증업무는 보증사업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□ 상세내용 문의

- 신용보증기금 전국 8개 영업본부 內 혁신성장지원팀(1588-6565)

4 제출서류

구 분	서류 목록	비 고
정보제공동의서 ^{주1)}	고객정보 활용동의서	필수
기업개요 ^{주2)}	기업개요표 또는 사업계획서	
사업자정보	주주명부	해당 시
부동산정보	임대차계약서	
인·허가 등	각종 인허가 및 산업재산권	

주1) 금융정보, 세무회계정보 등 보증사업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사업기관에서 수집하여 검토함

주2) 보증사업기관 소정 양식

- (클린테크) 아래의 (대상품목)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(단순 도·소매업종 제외)
 - 태양광, 풍력,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전, 수소, 핵융합 등의 탈탄소에너지의 생산, 보급 및 저장에 필요한 모든 산업을 포함

□ (대상품목)

구분	분류	세부분류
재생 에너지	재생에너지 생산	태양광발전, 재생열에너지, 풍력발전, 해양에너지, 바이오매스 에너지, 가스터빈(바이오가스) 발전플랜트
	가상발전소 및 분산형 에너지 공장	분산에너지 시스템, 스마트그리드, ICT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·운영
에너지 신산업	송배전	초고압직류 송배전, 스마트 직류배전, 전기·수소차 충전 인프라/서비스,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·운영
	에너지디지털화 및 효율화	초임계CO2발전시스템,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, 가정용 에너지관리, 스마트조명, 제로에너지빌딩, 스마트홈, 지능형 공조시스템, 폐열·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·개조·운영,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·운영,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·운영, 제로에너지 건축물 신규 건설·리모델링 및 취득,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·운영,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센터 구축·운영
탈탄소 에너지	원전/SMR/핵융합	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, 관련 소재·부품·장비 생산(R&D 연구활동 포함)
	수소 (단, 그레이 수소* 제외)	수소에너지, 무탄소 가스발전(수소, 암모니아), 수소·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·저장·이송 및 관련 인프라 구축·개조·운영 및 소재·부품·장비 제조

구 분	분 류	세부분류
탈탄소 에너지	기타 대체 에너지원	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, 폐자원에너지, 폐열회수, 에너지 하베스팅, 고온환원처리 시스템
에너지 저장	에너지저장장치 및 차세대배터리	연료전지 발전, 에너지 가스변환, 리튬이온배터리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슈퍼커패시터, 차세대 이차전지

* 그레이 수소(Gray Hydrogen):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는 수소로,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. 공장의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부생 수소와 천연가스나 석탄에서 추출하는 개질 수소로 구분된다.